## 예 산 총 칙

2005 년도 [2 회추경]

\* 제1조 : 2005 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세입·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769,845,000	23,095,350
684,300,000	20,529,000
85,545,000	2,566,350
10,235,000	307,050
3,620,000	108,600
10,400,000	312,000
1,832,000	54,960
3,006,000	90,180
2,401,000	72,030
1,032,000	30,960
1,343,000	40,290
643,000	19,290
16,493,000	494,790
34,540,000	1,036,200
	769,845,000 684,300,000 85,545,000 10,235,000 3,620,000 10,400,000 1,832,000 3,006,000 2,401,000 1,032,000 1,343,000 643,000 16,493,000

※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 46,880,000천원

제2조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200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658,731천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 3. 배상금, 국선변호료, 법정보상금
- 4. 지방채 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경비
- 5. 재해 대책비
- 6. 반환금
- 7. 선거관련 경비